|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의 일부 개정 건의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상 선원 운영 규정 필요"

배경과 의의

한종길 해운산업위원회 위원장

-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 前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
- 前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연구원

논의 배경

2017년 초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양질의 선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다. 2018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에는 선사재건을 위한 선박확보, 화물확보 지원책은 담겼지만 정작 해운재건의 핵심인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9년 1월 국가필수해운제도 법령이 비상사태의 기능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이하, 해운위)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필수 해운제도 법령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속한 법률제정을 우선시했으면서도 법률 4조



의 내용(선원의 인력충원과 양성계획)을 중심으로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해왔다.

논의 중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회피하는 선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벌칙 조항의 추가는 과도하다는 의견, 선원양성계획은 기존의 선원기본계획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해운재 건계획이 조선업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를 받아 WTO규정 위반이라는 외국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등과 관련하여 노사정 위원의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간의 논의 성과를 골자로 하여 공익위원의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다.

논의의 주요 내용

- 국가필수선박 유지에 필요한 선원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한다.
- 국가필수선박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이외에도 국책금융기관이 지 정하여 세금이 투입된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선박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국 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및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국가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운송계약에 관한 우선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의의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법률개정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발생 시 해운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원양성계획을 정부차원에 수립하여 선원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대한 안정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국가필수 선박의 대상을 한국선원, 특히 신규대졸자가 승선하게 될 해운재건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향후 예상되는 신규졸업자의 미취업 실업위기를 예방한다. 또한,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승선제한명령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제재와 준수하는 선박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여 국적선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문

국회는 2019년 1월 15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 기능 유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해운산업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만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해당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 등의 인력양성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1.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O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등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에 필요한 선원에 대한 인력 양성계 획을 포함한다.
- 시행령에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선원 교육 인프라 확충방안, 맞춤형 선원교육을 통한 고용 미스매칭 해소. 선원의 구인 및 구직시스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 o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선박의 범위를 확대한다.
- 시행령에 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선박, ②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원선박 등의 선박을 포함한다. 국가의 해운재건 계획에 따라 건조 및 대체된 선박,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화물선, 여객선, 어선, 부선, 예인선 등의 동원선박을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범위에 모두 포 함한다.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인의 업무로 인해 수혜를 입은 국내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이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O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4.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국가국민경제에 긴요 한 물자 및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운송계약에 관 한 우선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벌칙

○ 선박소유자 등의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칙조항을 둔다.

2019년 8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한종길(성결대 교수), 이윤철(한국해양대 교수), 황진회(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권창 영(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홍성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우린(청년해운조선 물류인모임 대표)

※ 첨부 자료: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 법률 비교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를 위한 법률 비교표

혀해	개정의견	
25	개정안	해설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 (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 등 대비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 (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법 제4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현행 제4호는 제5호로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력양성계획을 포함시키고 최소한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자함. 선원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상사태등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선원에 대한 인력양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 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 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 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 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 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 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 에 대한 지원방안 4.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비상사 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에 필요한 선원에 대한 인력양성 계 획(신설) 5.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	• 신설되는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에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방안, 수요 탄력적 선원인력 양성프로그램, 맞춤형 선원교육을 통한 미스매칭해소, 선원의 구인 및 구직시스템활성화 등을 충분히 포함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 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	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필수선박이 확대되는 경 우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선박소 유자등에게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

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 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 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다

- 1. 「국제선박등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 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 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 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국제선박등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선 박(신설)

한의 명령이 가능하므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신설되는 조항에서 위임하는 시 행령에는 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에 따라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선박. ②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동원선박 등의 선 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국가의 해운재건 계획에 따라 건조 및 대 체된 선박,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화물 선, 여객선, 어선, 부선, 예인선 등 의 동원선박을 국가필수선박의 지 정 범위에 모두 포함하기 위함. 특 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 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 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이므로, 법인의 업무로 인 해 수혜를 입은 국내 해운회사 소 유(공사 및 특수목적회사 소유 포 함)의 선박이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한국 인 선원의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 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 | 1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법 제8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 여.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국가 필수선박의 선박소유자등에 대하 여 명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 한명령의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 제

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
-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 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
-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하는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 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
- 2. 「국제선박등록법」제10조에 따 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 우
-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 하는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 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6항 에 따른 승선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신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 | 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 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박의 선박소유자등이 임금 부담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 고 있어.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제도"는 한 국인 선원의 고용창출에 핵심적인 조항이므로, 위 조항의 신설을 통 해 법적 강제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항만법」제30조 및 「항만공사법」제30조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항만공사는「항만법」제30조 및 「항만공사법」제30조에도 불구하 모로. 국내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 법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 항의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를 더 하여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장기 운송계약시 최적정가입찰제, 종합 심사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 화물확보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함.
- •국내 선박소유자의 국가필수선 박 지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 법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창 출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선박소유자등에게 국 가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비 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 지에 필요한 물자의 운송계약에 관한 우선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 다.(신설)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국가필수선 박의 지정을 꺼리는 현실을 타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은 유인 책 이외에도 제9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추 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 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 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은 자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3항(신설),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 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선제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신설)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제5 조제3항"을 추가하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현행 제2 호는 제3호로, 현행 제3호는 제4 호로 변경), 법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 박의 지정 해제는 실효성을 기하 기 어려움. 선박소유자는 국가필 수선박의 지정보다 해제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시 국가필수 선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보다 벌칙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함.

•한국인 선원의 고용창출에 핵심적인 조항인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명령에 대하여도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회적 대화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 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은 자	
--	---	--